

---

- 2025년 광명시 종합감사 -  
감사결과보고서

---

2026. 2.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2과)

# ■ 목 차 ■

|                      |    |
|----------------------|----|
| I. 감사실시 개요 .....     | 1  |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 2  |
| III. 감사결과 .....      | 3  |
| ① 감사결과 총괄 .....      | 3  |
| ② 종합의견 .....         | 3  |
| ③ 주요 지적사항 .....      | 4  |
| IV.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 9  |
| ① 본처분 .....          | 9  |
| ② 현지처분 .....         | 9  |
| V. 감사만족도 조사 .....    | 10 |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90조 등에 따라 2020년 5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광명시를 「2025년 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 감사 시행 ※ 광명시 지난 감사 : 2020. 4. 27. ~ 5. 12.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과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민의 권익을 보호

## 2.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 감사대상: 광명시 (소속기관 포함)
- 감사범위: 2020. 4. 1. 이후 업무 전반 (위임사무 자료요구 2022. 1. 1. 이후)
- 중점사항
  -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 최우선 해결
  - 민생안정을 위한 안전, 인·허가,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
  - 예산, 계약, 보조금 등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

## 3. 감사실시 과정

- 사전준비: 자료수집(2025. 9. 19. ~ 10. 12.), 착안회의 실시(2025. 9. 30.)
- 감사기간: 2025. 10. 29. ~ 11. 6.(7일간) ※ 사전조사: 10. 13. ~ 10. 21.(7일간)
- 감 사 반: 감사단장 등 3개팀 19명

## 4. 감사결과 처리

- 마 감 회 의: 2025. 11. 6. ※ 광명시 부시장 등 참석
- 감사위원회(심의·의결): 2025. 12. 8. / 12. 22., 2026. 1. 12. / 1. 19.

## 1. 일반현황

- 경기도 서부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서울특별시, 서쪽은 시흥시와 부천시, 남쪽은 안양시와 접하고 있음
- 인구, 면적 등 일반현황

(2025. 7. 31. 기준)

| 인 구                        | 면 적                                    | 행정구역 수              |
|----------------------------|--|---------------------|
| 288,100명<br>(도내 2.1%, 16위) | 38.5km <sup>2</sup><br>(도내 0.38%, 28위) | 19동 / 496통 / 3,146반 |

##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 1실 6국, 39담당관·과, 1의회, 1직속기관, 3사업소, 19동
- 인 력 : 1,276명 \* 본청 705, 의회 25, 직속기관 79, 사업소 199, 동 268

## 3. 재정규모

- 예산규모 (2025년 본예산 기준)

(단위: 억 원)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
| 11,343 | 9,229 | 2,114 | 35.9% | 57.5% |

## 4. 주요사업 현황

-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2019~2028년, 342,511백만 원)
-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2021~2028년, 163,491백만 원)
-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2023~2027년, 39,800백만 원)
-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2019~2027년, 36,500백만 원)
-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사업(2022~2026년, 30,627백만 원)

## 1. 감사결과 총괄

○ 2025년 광명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현황

| 행정상 (건) |    |    |    |    | 신분상 (명) |     |     |    |    | 재정상 (백만 원) |     |    |     |
|---------|----|----|----|----|---------|-----|-----|----|----|------------|-----|----|-----|
| 구분      | 계  | 시정 | 주의 | 통보 | 계       | 중징계 | 경징계 | 훈계 | 주의 | 계          | 추징  | 회수 | 환급  |
| 본처분     | 53 | 12 | 41 | 30 | 48      | 1   | 5   | 41 | 1  | 993        | 835 | -  | 158 |
| 현지처분    | 4  | -  | 1  | 3  | -       | -   | -   | -  | -  | 3          | -   | 3  | -   |

※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주의·통보 동시처분 등)

## 2. 종합의견

○ 이번 광명시 종합감사는 2020년 5월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사전요구자료 및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위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전 감사에 비해 지적건수와 신분상 처분은 감소하였음

※ 총 건수(69건 → 57건) / 신분상 처분(58명 → 48명)

○ 지적건수의 감소는 광명시가 그간 꾸준히 실시해 온 자체감사 활동과 자정 노력 등 업무개선 성과의 결과라고 판단됨

○ 다만, 잘못된 입찰참가자격 공고 및 확인 소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공사감독 부적정,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사회보장급여 환수 업무 부적정, 처분의무 부과 농지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마약류 관리 업무 소홀 등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검토 미흡으로 인한 위법·부당사례가 여전히 확인되었음

○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이를 진단하고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 3. 주요 지적사항

#### 1 잘못된 입찰참가자격 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 소홀 등

- 가과는 “ㄱ 용역”의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수특이사항: ○○용 영상)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으로 모든 “○○용영상”의 유효기간이 20○○. ○. ○○. 만료된 바, 입찰참가자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용역 입찰공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도 20○○. ○. ○○. 계약 체결함
- 나과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면 “○○용영상”의 자격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제안서 평가 실시함

조치  
사항

- 계약 업무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정당한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징계 ○명, 훈계 ○명)

#### 2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등

- 다과는 '20년 ㄴ공사 등 ○○ 보수공사(단가계약)와 '20년 ㄷ공사 등 ○○ 보수공사(단가계약)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아닌 특정 업체에 작업 지시를 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묵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사 감독관의 서면 지시 의무 사항 등을 부적정하게 수행함
- 라과는 '20년 ㄹ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허업체가 하도급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하였고 특허업체가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계약상대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

조치  
사항

-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및 공사감독관의 공사 시행 단계에서의 업무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 하도급 혐의가 있는 계약상대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영업정지, 벌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경징계 ○명, 훈계 ○명)

### 3 □공사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 누락 등 공사감독 부적정

- 마과는 □공사(3단계)의 용역을 시행하면서 비굴착공법에 대한 신기술·공법 선정 절차가 누락되었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비굴착 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등도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보완하지 않는 등 실시설계용역 감독을 부적정하게 수행함
- 그리고 공사 발주·착수·시행 시에도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여 비굴착 보수공사를 시공자가 임의대로 시공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조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등 필요 절차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하게 함

조치 사항

- 용역감독 및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시공 중인 비굴착 보수공사에 대하여 누락된 절차 이행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벌점 부과하는 등 규정을 검토하여 조치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중징계 ○명, 경징계 ○명, 훈계 ○명)

###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소홀

- 바과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ㄴ시설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 2건의 행위허가를 하면서 허가 대상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인데도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허가하여 법령을 위반한 시설물이 설치되게 함

조치 사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하여 관리계획 변경 후에 행위허가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누락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 5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등

- 사과는 시설폐쇄 행정처분한 대기배출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른 이행실태를 확인하지 않아 2000. 0. 0. 재적발 될 때까지 약 18개월 동안 대기배출(도장)시설을 사용하도록 방치함

\* 최초(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최종확인(행정명령이행 완료시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 또한, 폐수배출업소 4개소가 폐수량 증가로 종별이 바뀐 것을 확인하거나, 가동시작 신고 없이 상태에서 시설물을 가동하고 있는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조치 사항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업무를 철저히 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가동시작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행정절차를 이행 (시정)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0명)

## 6 지주 이용 간판(전광판) 설치 업무 부적정

- 아과와 가관은 시정홍보를 위해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면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절차’와 ‘설치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특정구역’에 높이 6.97m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함
- 바과는 아과로부터 ‘스지구’ 내 공작물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지가 「○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2000. 0. 00. 개발 행위허가를 승인함

조치 사항



-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절차 등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미 설치된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미이행된 절차에 대하여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주의 0명)

## 7 사회보장급여 환수 업무 부적정

- 자과와 차과는 '20년 ~ '20년까지 자과 0000팀으로부터 환수가 필요한 대상자 00명의 환수대상액 10,894,960원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데도 보장비용 환수 또는 반환 결정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자과 등 0개 부서는 '20년 ~ '20년까지 환수대상자 00명에 대하여 환수를 결정하고도 21,585천 원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독촉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12,306천 원의 미납액이 발생함

조치 사항

- 환수가 필요한 대상 ○○건은 보장비용 환수결정 또는 반환결정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환수 및 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건은 개별건에 따라 납부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시정)
- 사회보장급여 환수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 8 처분의무 부과 농지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 카과는 “ㄷ동 ○-○번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이축, 형질변경)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임에도 다른 용도(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처리함

조치 사항

- 「농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전용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 9 마약류 관리 업무 소홀

- 타과는 '20년 ~ '20년까지 휴·폐업 신고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ㄷ약국 등 ○개소에 대해 마약류 재고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 70종(날개 수량이 4,101개)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리고 NIMS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통해 ○건의 1처방 2약국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체 감시활동을 하지 않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에 대한 기한을 초과하여 보고하였는데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의 사고마약류 폐기처리 시 규정에서 정한 폐기 방법에 따르지 않았으며, ○곳의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지 않음

조치 사항

- 자체 감시활동 강화 등 마약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휴·폐업한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재고 현황 및 1처방 2약국 사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사고마약류 보고기한을 초과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 1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 파과는 K운수(주) 등 총 0개 社의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전에 변경인가를 받지않고, 수차례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였는데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일절 하지 않음
- K운수(주)의 경우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에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선지원금 약 1억 1천만 원을 공정하지 않게 지급 받음

\* 매년 도내 시내버스업체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개선지원금 지급

조치 사항



- 인가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 (주의·통보)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0명)

## 11

### 지방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 하과는 필수보직기간(2년) 미경과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규모를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22년 ~ '25년까지 전보 인사를 낮게는 43%, 높게는 57.3%로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함

\* 그밖에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아울러 제6호 예외사유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00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00명에 대하여 00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등 전보 인사를 관계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함

조치 사항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보 인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주의)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0명)

## IV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 1. 본처분

- 행정상 조치: 53건 (시정 12, 주의 41, 통보 30)
  - ※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주의·통보 동시처분 등)
- 신분상 조치: 48명 (중징계 1, 경징계 5, 훈계 41, 주의 1)
- 재정상 조치: 835,128천 원 (추징), 158,412천 원 (환급)

“표 생략”

## 2. 현지처분

- 행정상 조치: 4건 (주의 1, 통보 3)
- 재정상 조치: 3,298천 원 (회수)

“표 생략”

## 1. 조사 개요

- 기 간: 2025. 10. 29. ~ 11. 6. (7일간)
- 대 상: 감사장 방문 수감공무원 전체 (총 40명 참여)
- 내 용: 감사관의 자세, 전문성, 불필요한 자료요구 여부 등 설문서 작성

## 2.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총 평) 감사관의 친절도, 의견청취 노력도, 전문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대체로 긍정적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사례가 99.6%)
- (설문조사 결과) 총 42명 참여

| 연번 | 설문내용      | 만족도                      |
|----|-----------|--------------------------|
| 1  | 감사관 친절도   | 긍정(98%), 보통(2%), 부정(0%)  |
| 2  | 의견청취 노력도  | 긍정(95%), 보통(5%), 부정(0%)  |
| 3  | 감사관 전문성   | 긍정(90%), 보통(10%), 부정(0%) |
| 4  | 업무추진 도움여부 | 긍정(88%), 보통(12%), 부정(0%) |
| 5  | 불필요한 자료요구 | 긍정(88%), 보통(12%), 부정(0%) |
| 6  | 지적사항 수용여부 | 긍정(79%), 보통(19%), 부정(2%) |

## 3. 조치사항

-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단에 공유하여 향후 현지감사 대응 개선자료로 활용